

의안번호	제885호
의결 연월일	202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김국기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5년 3월 4일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국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85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4일

발 의 자 : 김국기, 최정훈, 안지윤,
박재주, 안치영, 오영탁,
조성태

1. 개정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(안 제17조)
 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9조 개정(2022.8.2.)에 따라 조례 제17조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
- 나. 관련부서 :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
- 라. 조례안예고 : 예고대상(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17조(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)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15층 이하로 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

제32조(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) 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시행 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(戶數)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제29조(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등)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·도조례로 층수제한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(비용추계서 작성 대상) 제1호

○ 사 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